

2001. 10. 16.

國家人權委員會 職制(案)

2001. 10

國家人權委員會
設立準備企劃團

I. 推進背景

1. 「國家人權委員會法」이 제정됨에 따라

- 동 법에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사무처」를 설치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직제」(대통령령)를 제정하려는 것임

< 위원회조직과 운영(동법 제18조) >

-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II. 推進日程

※ 우선적으로 「직제령」을 확정(2001년 10월말까지)한 후 기관신설 및 개칭(2001.11.25)준비 등의 후속조치 가능

- 직제 시행일은 법시행일(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 2001.11.25)이전으로 함
- ※ 인권위원 및 소속직원의 임명 등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동법 부칙제1항)
 - 2001년도 본예산편성 및 인력충원등을 위해서는
 -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0월말까지는 직제안 확정 필요

Ⅲ. 委員會의 構成 및 機能

1. 委員會의 構成

-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된 합의제 국가기관으로 설치
- 위원장 : 1인(장관급 정무직)
- 위 원 : 상임위원 3인(차관급 정무직), 비상임위원 7인
 - * 국회선출 4인(상임2인 포함), 대통령지명 4인, 대법원지명 3인
 - ⇒ 대통령이 임명
 - * 위원중 4인이상 여성으로 임명
- 임 기 : 3년, 1차 연임가능
- 직무수행의 독립성
 -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2. 委員會의 機能(법 제19조)

-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기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委員會의 構造

가. 법에 정한 조직

- 『위원장』(법 제5조, 제6조, 제16조 4항)
 - 위원회 대표·위원회 업무 통할
 - 사무총장을 통해 사무처 지휘·감독

○ 「상임위원 3인」 (법 제5조)

- 소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위원장 겸직
- 위원회의 심의안건, 소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운영 및 총괄·조정

○ 「비상임위원 7인」 (법 제5조)

○ 「소위원회」 (법 제12조)

- 위원회의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둠
- 소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

○ 「자문기구」 (법 제15조)

-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둠

○ 「인권자료실」 (법 제27조)

- 인권에 관한 국내외 정보와 자료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인권자료실을 둠

○ 「조정위원회」 (법 제41조)

- 기능 :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 구성 : 위원 3인 (2인은 위원회 위원 중, 1인은 외부 전문가 위촉)

○ 「징계위원회」 (법 제17조)

-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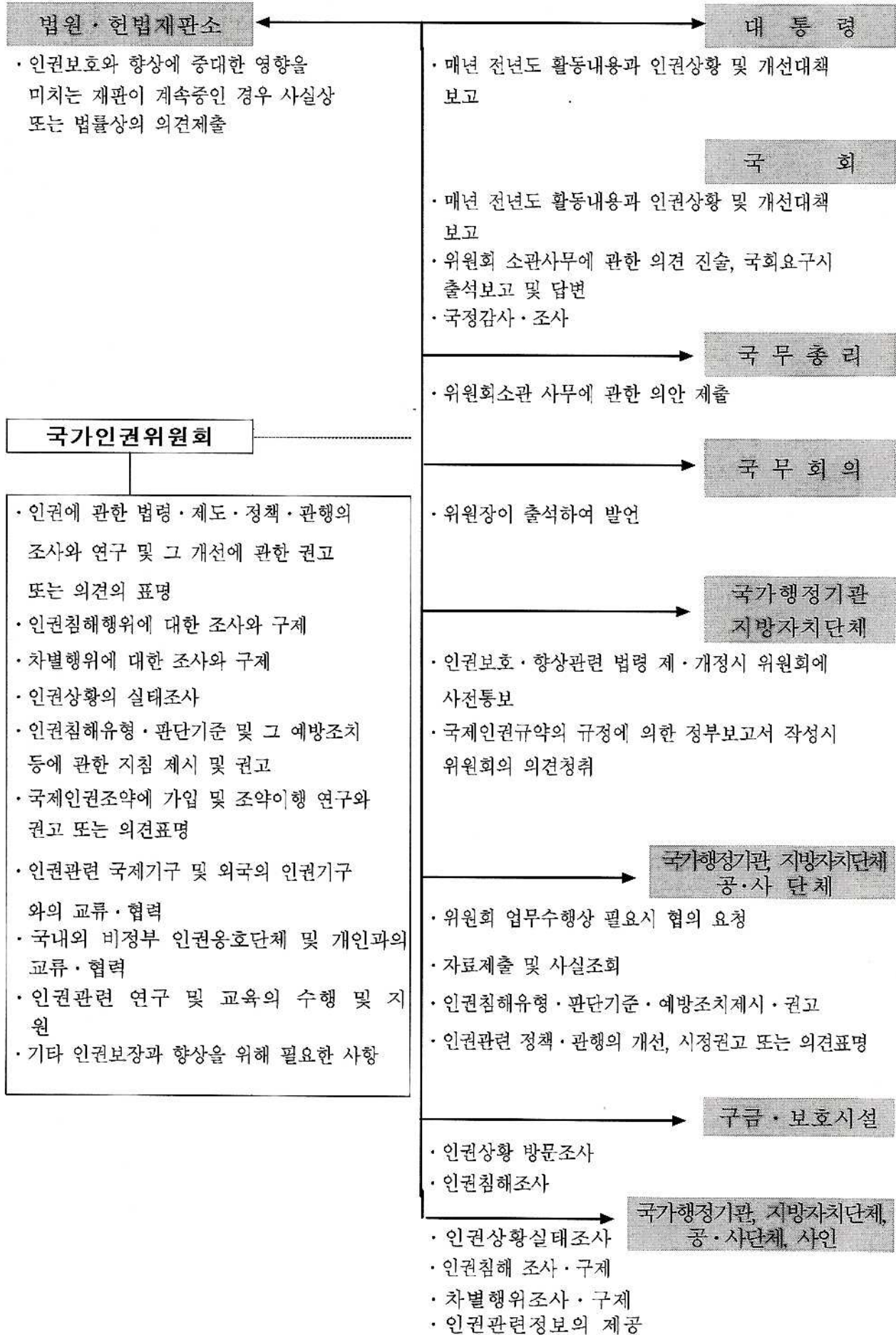
○ 하부조직 : 「사무처」 (법 제16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
-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둠
-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
 -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나. 법에 정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기구

- 전문위원실 :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
- 인사위원회 : 위원장 자문기구로 설치

4. 業務遂行體系



IV. 事務處의 設置(案)

1. 基本方向

< 기구설치 >

-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범 국가차원의 환경조성·제도개선·정책조정·조사 및 조정기구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
 - 인권관련 법·제도·정책 등 총괄·조정
 - 국가적인 인권연구 및 교육 체제 수립
 - 인권 취약 영역인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조사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협력 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구축

-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 위원회의 심의·의결·의안·의사관리 기능과 사무처의 정책·집행 기능 분리
 - 위원회의 다양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처 조직 및 부속기관 설치

< 정원관리 >

-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수용
 - 인권의 보호와 향상만을 기능으로 하는 새로운 기구로서의 성격을 고려
 -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
 - 별정직·전문직 공무원제도 및 개방형 임용제도 최대한 활용
 -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의 파견 공무원 및 직원 활용

-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계약직 공무원등 최대 활용
 - 각 직위에 가능한 한 일반직, 별정직 및 계약직의 복수직렬화
 - 일반직의 경우 특별채용 절차의 활용

2. 下部組織의 設置(案)

가. 사무총장

-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 소속직원 지휘·감독

나. 補佐機關의 設置(案)

○ 위원장의 보좌기관 : 「홍보관」

- 위원회 홍보업무를 담당하며 위원장의 보좌기관으로 설치

○ 사무총장의 보좌기관 : 「법무의사관」, 「인권상담센터」

○ 「법무의사관」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등의 의안 및 의사관리
- 의결 및 심의안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기능 담당, 위원회 간사 임무

○ 「인권상담센터」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진정의 접수·배부
- 각종 인권관련 상담 및 민원접수

다. 補助機關의 設置(案) : 1실 5국 2관 26과(담당관), 1심의관

○ 「정책기획실」

- 정책수립 및 평가, 교육연구, 정보화, 기획예산·행정관리 업무 총괄

○ 「인권제도국」

-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협의·조정업무 수행

○ 「조사기획국」· 「인권침해조사국」· 「차별행위조사국」

-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조사와 구제·조정 업무

○ 「대외협력국」

- 시민사회·외국 인권위원회·국제기구·국제인권단체와 사이의 협력

○ 「총무과」

- 사무총장직속으로 인사·서무·감사 등의 업무 담당

라. 附屬機關의 設置(案)

○ 「인권연구교육원」 : 3부 9과

- 연구·교육기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설치
- 국내법과 국제법·외국법·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연구
- 각 분야별 국내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인권 지표 개발
- 다른 연구교육기관과 협력
- 분야와 영역별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 특수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업무 담당

○ 「인권자료실」 : 3개 팀

- 인권에 관한 국내외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
-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도서관 기능
-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설치

5. 部署別 機能

홍보관

□ 주요기능

- 위원회 설립의의와 활동에 관한 국내외 홍보계획 수립·조정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사단체, 일반국민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활동
-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장 보좌
- 위원회의 정책과 실적에 대한 홍보
- 위원회 홍보자료 제작 계획 및 발간·배포
- 위원회 및 인권문제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 언론매체 보도지원 및 외신보도의 지원
- 언론매체 인터뷰에 관한 사항
- 기자실 및 회견장의 운영
- 사진실 운영
- 보도자료의 제공
- 기타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 정원 : 7인

- 2·3급 1인, 5급 2인, 6급이하 2인, 기능직 2인

법무의사관

□ 설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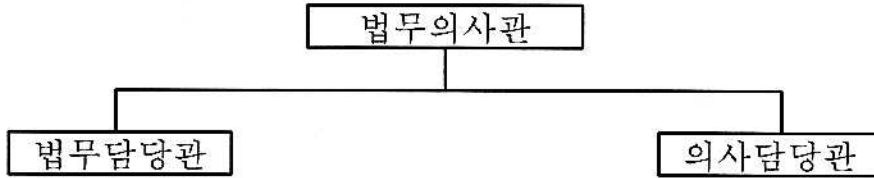
- 위원회의 구조 및 기능상 법률적 보좌기능에 의한 사전 검토 필요
 - 합의제 의사결정 기관인 위원회의 법률적 보좌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구제·조정을 통해 자유와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법률적 보좌
- 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보좌를 통한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
 - 위원회 안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사단체 등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안 검토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사건 의결에 대한 검토
 - 위원회 주관 법령안
- 각종 송무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조정
- 인권관련 법령과 국제인권조약 및 기준에 관한 검토 및 법제화에 대한 보좌
- 위원회의 의안 및 의사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통하여 회의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의사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집행
 - 위원회 각종회의 회의록의 작성·유지

□ 주요기능

-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
- 위원회 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국무회의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 인권관련 법령 및 국제인권조약과 기준의 국내시행에 관한 법률적 지원
- 위원회가 수행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의 총괄
- 위원회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법규집 및 위원회 결정례집 발간
- 사무처 각 부서에 대한 법률적 자문
- 위원회소속 직원윤리규정의 제정
- 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의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각종회의록의 작성·유지

□ 조직(안)

< 기 구 >



< 정 원 >

구 분	계	2·3급	4급	5급	6급 이하	기능직
총 계	18	1	2	4	8	3
법무담당관	9	1	1	2	3	2
의사담당관	9		1	2	5	1

□ 부서별 기능

< 법무담당관 >

- 위원회 심의·의결 안전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
- 법령안 및 국무회의 제출안건의 입안·심사 및 협의
- 인권관련 법령 및 국제인권조약과 기준의 국내 시행에 관한 법률적 지원
-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의 총괄
-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의 총괄
- 법규집 편찬 및 발간
- 위원회 결정의 분석 및 결정례집 발간
- 사무처 각 부서에 대한 법률적 자문
- 위원회소속 직원윤리규정의 제정
- 기타 법무관련 사항

※ 정원 : 9인

- 2·3급 1인, 4급 1인, 5급 2인, 6급이하 3인, 기능직 2인

< 의사담당관 >

- 인권위원회 전원회의, 소위원회 안건의 취합 및 관리
- 위원회 의사일정의 수립 및 집행
- 위원회 전원회의, 소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유지·관리
- 위원회 전원회의, 소위원회 의결·결정사항의 정리·배포
- 조정위원회의 운영

※ 정원 : 9인

- 4급 1인, 5급 2인, 6급이하 5인, 기능직 1인

인권상담센터

□ 주요기능

- 인권관련 진정사항의 안내·상담·종합계획의 수립
-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 진정 이외 일반민원의 접수 및 해당 실국 송부
- 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해당 실국 송부
- 진정서 접수·분류 및 조사과 송부
- 일반 권리구제 상담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24시간 긴급접수전화(hot-line) 운영
- 진정접수 내용 및 상황의 DB입력 및 관리

※ 정원 : 16인

- 3.4급 1인, 5급 3인, 6급이하 9인, 기능직 3인(파견인력 별도)

총 무 과

□ 주요기능

- 공무원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표창 기타 인사사무
- 인사위원회의 운영
- 파견인력의 임용·복무·교육훈련·후생 기타 인사사무
- 징계위원회의 운영, 징계안건의 조사·처리 및 소청관련 업무
-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 국가인권위원회직원윤리규정 집행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
- 퇴직 인권위원 및 퇴직공직자의 공직 취임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과 소속직원의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방지 계획의 수립·집행
- 보안업무
-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물품의 구매·조달
-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업무 총괄
- 청사 및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내 다른 실·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정원 : 42인(청사관리 13인 포함)

- 4급 1인, 5급 4인, 6급이하 12인, 기능직 12인

* 청사관리인원: 5급 1인, 6급 이하 3인, 기능직(방호원) 9인

정책기획실

□ 설치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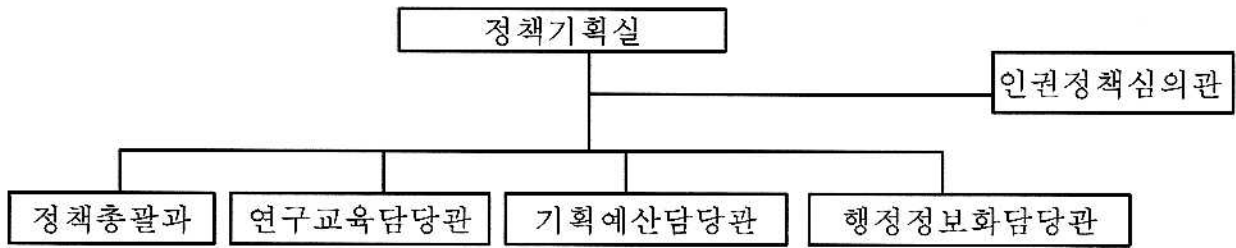
- 인권향상 및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각종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총괄·조정하는 기능 필요
 - 정부 및 민간부문의 인권정책 및 활동 총괄조정
 - 인권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점검
 - 인권위원회의 주요업무계획 지침의 수립 및 종합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 조직의 예산과 행정을 관리하고,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업무전산화를 실현하는 기능이 필요
 - 위원회의 각종 중·단기 정책과 계획을 종합·조정
 -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 업무처리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보편적 인권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기능이 필요함
 - 인권연구와 교육의 기본계획의 수립
 -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 주요기능

- 중·장기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인권관련정책과제의 개발 및 그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예방조치에 관한 지침 수립
- 위원회 예산의 편성과 집행
-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 위원회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 위원회 활동에 대한 연간보고서의 작성
- 인권정책자료 수집·관리와 인권제도백서 및 자료집의 발간
- 인권연구와 교육의 기본계획의 수립
-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 업무처리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조직(안)

< 기 구 >



< 정 원 >

구 분	계	1급	3급	3.4급	4급	5급	6급이하	기능직
총 계	46	1	1	1	3	14	20	6
정책총괄과	14	1	1	1		4	5	2
연구교육담당관	9				1	3	4	1
기획예산담당관	10				1	3	4	2
행정정보화담당관	13				2	3	7	1

□ 부서별 기능 및 정원내역

<정책총괄과>

- 인권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 위원회의 주요 업무계획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에 관한 연구·정책수립·협의·시행 계획 수립·시행과정 총괄
- 인권에 관한 정책과제의 개발
-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예방조치에 관한 일반지침 제정에 관한 계획 수립
- 인권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 민간부문 인권활동의 분석·평가
- 인권정책자료 수집·관리 및 자료집의 발간
- 인권위원회 활동에 대한 연간보고서 및 인권백서의 작성
-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하는 인권상황 종합보고서 작성
- 자문위원회 운영
-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정원 : 14인

- 1급 1인, 3급 1인, 3.4급 1인, 5급 4인, 6급이하 5인, 기능직 2인

<인권정책심의관>

- 정책기획실장의 인권정책 업무를 보좌

<연구교육담당관>

- 인권연구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 인권연구와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
- 인권연구교육원·인권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평가 및 지원
- 위원회의 각 실국 또는 외부에서 요청하는 연구와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인권교육 연구원과 협의·조정
- 인권연구교육원의 연구·교육업무와 관련 외부 기관에 대한 협의 지원
- 인권연구교육원의 연구결과발표 및 교육실시, 학술행사 등 행사개최에 관한 협의·지원
- 인권자료실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 기관·시민단체와 사이의 협의 지원

※ 정원 : 9인

- 4급 1인, 5급 3인, 6급이하 4인, 기능직 1인

<기획예산담당관>

- 위원회의 각종 주요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 위원회 및 소속기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 정원 : 10인

- 4급 1인, 5급 3인, 6급이하 4인, 기능직 2인

<행정정보화담당관>

- 위원회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 자체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을 지도·감독
- 위원회 업무관련 통계의 구축 및 통계자료의 분석·발간
-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보고심사 및 관리
- 인권보호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추진
- 진정처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 인권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종합·관리
- 전자문서 유통 및 이용촉진의 지원
- 인터넷과 정보통신망 운용·관리 및 이를 통한 국내외 홍보지원
- 전산 및 통신장비의 관리·유지
- 정보화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 정보화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 정보화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 정보화관련 교육 및 기타 관련 행정

※ 정원 : 13인

- 4급 2인, 5급 3인, 6급이하 7인, 기능직 1인

인권제도국

□ 설치필요성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 차원에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협의 및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함
 - 국제인권조약 및 기준의 비준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정책조정
 - 인권관련 법령에 관한 점검 및 개선을 위한 협의·정책조정
 - 인권향상 및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기본적 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인권향상 및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시스템구축
 - 인권향상 및 인권침해방지제도의 운영을 위한 협의·조정 및 지원
 - 일반지침 제정 및 청문회 개최
- 인권관련 각종 법령안, 제도 및 관행에 대한 협의 및 개선안 제시를 통한 인권향상정책 추진 필요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국회 등 헌법기관의 법령개정안 협의
 -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인권관련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 기타 공·사 단체의 인권관련 제도 및 관행의 심사
-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제4호·제6호·제7호,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5조, 제2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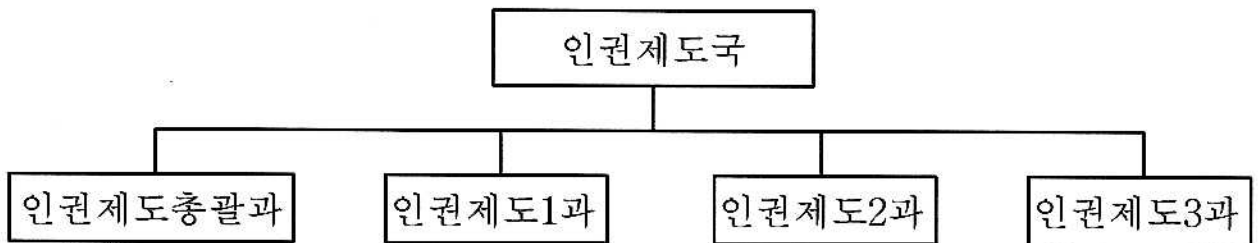
□ 주요기능

- 인권관련 제도 및 관행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조사의 총괄·조정
-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비준과 이행상황 점검 및 국내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조정
-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조정
-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시
- 인권에 관한 현행법령 전반에 대한 검토 개선계획 수립 및 정책 조정
- 인권관련 제도 및 관행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중앙행정기관의 법령개정 협의안에 대한 검토·협의·개선권고
- 헌법기관(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제외)의 법령개정 협의안에 대한 검토·협의·개선권고
-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개정안에 대한 검토·협의·개선권고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관련 관행에 대한 검토·협의·개선권고

-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인권관련 사건의 검토 및 의견제출
-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중인 법률안의 검토 및 의견제출
- 인권침해의 판단기준·침해예방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일반지지침의 제정과 시행권고
- 청문회 개최 및 청문회 결과의 정리와 배포
- 공·사 단체의 인권관련 제도 및 관행의 검토·협의·개선권고
- 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조정

□ 조직(안)

< 기 구 >



< 정 원 >

구 분	계	1급	2·3급	3.4급	4급	5급	6급이하	기능직
총 계	41		1	1	3	15	16	5
인권제도총괄과	11		1	1		3	4	2
인권제도 1과	10				1	4	4	1
인권제도 2과	10				1	4	4	1
인권제도 3과	10				1	4	4	1

□ 부서별 기능 및 정원내역

<인권제도총괄과>

- 인권제도국의 주요 업무의 총괄조정
- 법령·제도 및 관행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법령·제도 및 관행개선을 위한 실태파악 및 조사의 총괄조정
-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비준과 이행상황 점검 및 국내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협약·조정
-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협약·조정
-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시
- 국가기관, 공사단체와의 법령·제도 및 관행 개선 협의문제에 대한 총괄·조정
- 국가기관·공사단체의 인권의식의 조사
- 법령·제도 및 관행의 통보안과 그 개선 및 시정권고안의 접수와 관련된 행정지원
- 개선 및 시정권고안 사례의 수집, 분석 및 사례집의 발간
- 인권침해의 판단기준·침해예방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일반지침의 제정과 시행권고 업무 총괄
- 청문회 개최 및 청문회 결과의 정리와 배포
- 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조정

※ 정원 : 11인

- 2·3급 1인, 3.4급 1인, 5급 3인, 6급이하 4인, 기능직 2인

<인권제도 1과>

- 중앙행정기관 소관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상시적 조사·연구 및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권고·협약
- 중앙행정기관 소관 인권관련 법령개정 협의안에 대한 검토·개선권고·의견표명·협약
- 각 헌법기관(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제외) 소관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상시적 조사·연구 및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권고·협약
- 각 헌법기관(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제외)의 법령개정협의안에 대한 검토·개선권고·의견표명·협약
- 업무와 관련된 국제인권조약과 기준에 관한 검토

※ 정원 : 10인

- 4급 1인, 5급 4인, 6급이하 4인, 기능직 1인

<인권제도 2과>

-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인권관련 법률안의 검토
- 국회계류 인권관련 법률안의 협의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관련 조례 및 규칙, 정책과 관행에 대한 상시적 조사·연구·개선을 위한 의견표명·권고·협약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관련 조례 및 규칙안의 협의안 검토·개선권고·의견표명·협약

※ 정원 : 10인

- 4급 1인, 5급 4인, 6급이하 4인, 기능직 1인

<인권제도 3과>

- 각급 법원에 계속중인 인권관련 사건의 파악
-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인권관련 사건의 파악
-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인권관련 사건에 대한 의견의 검토와 제출
-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관 인권관련 법령 및 재판절차와 관행에 관한 조사·분석·개선권고·의견표명·협약
- 각급 법원의 판례 중 인권관련 판례의 조사·분석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중 인권관련 결정례의 조사·분석
- 공·사 단체의 인권관련 제도 및 관행의 파악
- 공·사 단체에 대한 협의안의 검토·작성

※ 정원 : 10인

- 4급 1인, 5급 4인, 6급이하 4인, 기능직 1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기구

□ 설치필요성

- 인권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이며,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인 조사·구제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구축
-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제3호, 제24조, 제30조 내지 제50조
- 조사기획국(조사1국) 설치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계획수립·업무조정·정보수집·조사절차와 방법에 관한 연구·조사원 교육훈련
 - 대규모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 기획·직권조사, 구금시설·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및 조정업무 전담
- 인권침해조사국(조사2국) 설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
 -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
 - 외국인등 특수한 집단 또는 소수자가 관련된 인권침해사건을 전담할 부서 설치
- 차별조사국(조사3국) 설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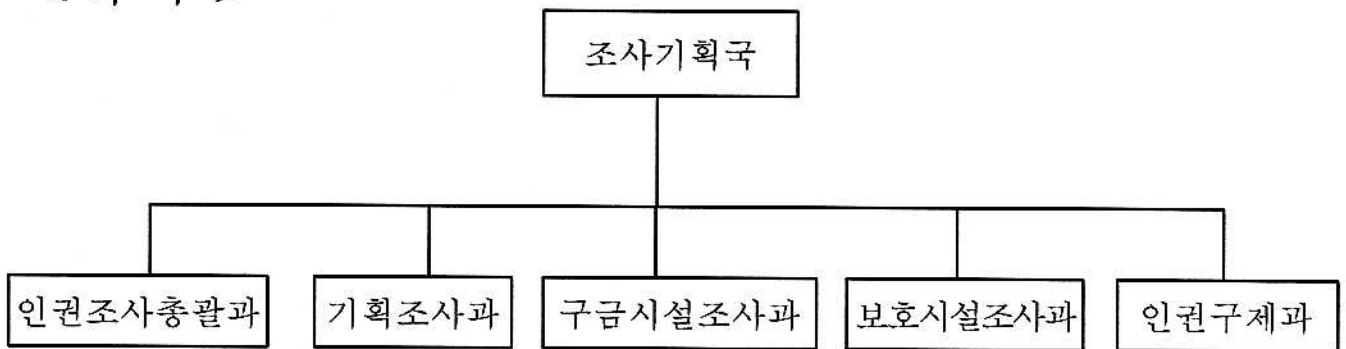
□ 조사기획국의 주요기능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의 기본계획 수립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의 총괄·조정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조정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와 개선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관련 위원회 결정 및 조정사례의 정리·분석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관련된 통계의 유지·관리
- 대규모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기획·조사·구제
-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제도 및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및 실시
-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진정에 대한 조정업무
-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진정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업무
- 조사기획국 소관 사항에 관한 진정인과 증인 등의 보호업무·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업무
- 기타 다른 조사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조직(안)

< 기 구 >



< 정 원 >

구 분	계	2·3급	3.4급	4급	5급	6급이하	기능직
총 계	67	1	1	4	19	36	6
인권조사총괄과	15	1	1		5	6	2
기획조사과	12			1	4	6	1
구금시설조사과	14			1	3	9	1
보호시설조사과	18			1	4	12	1
인권구제과	8			1	3	3	1

□ 부서별 기능

<인권조사총괄과>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의 기본계획 수립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의 총괄·조정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조정
- 위원회처리 진정사건의 결정 및 조정사례의 정리·분석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와 관련된 통계의 유지·관리
- 조사기법개발 및 조사요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사이버 공간의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구제 대책 수립
- 조사와 관련된 수사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조사기획국 소관 사항에 관한 진정인과 증인 등의 보호·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업무
-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정원 : 15인

- 2·3급 1인, 3.4급 1인, 5급 5인, 6급이하 6인, 기능직 2인

<기획조사과>

- 대규모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조사 및 결과처리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기획조사의 실시 및 결과처리
- 기타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의 조사 및 결과처리
- 조사한 사건에 관한 고발 또는 징계요구·과태료 부과

※ 정원 : 12인

- 4급 1인, 5급 4인, 6급이하 6인, 기능직 1인

<구금시설조사과>

- 구금시설(군 관련 구금시설 제외)에 대한 방문조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구금시설의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 구금시설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기타 구금시설의 인권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사항

※ 정원 : 14인

- 4급 1인, 5급 3인, 6급이하 9인, 기능직 1인

<보호시설조사과>

-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다수인보호시설의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 다수인보호시설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기타 다수인보호시설의 인권보호와 인권향상에 관한 사항 처리

※ 정원 : 18인

- 4급 1인, 5급 4인, 6급이하 12인, 기능직 1인

<인권구제과>

-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긴급구제조치제도의 연구·개선
- 긴급구제기관에 관한 정보의 유지·관리 및 협력
- 인권상담센터에서 의뢰한 진정인에 대한 긴급구제조치의 실시 및 권고
-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긴급구제조치의 실시 및 권고
- 긴급구제조치사건 사후관리
- 긴급구제조치의 통계작성 및 관리
- 진정인 또는 증언자 등에 대한 불이익금지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진정에 대한 조정업무
-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진정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업무

※ 정원 : 8인

- 4급 1인, 5급 3인, 6급이하 3인, 기능직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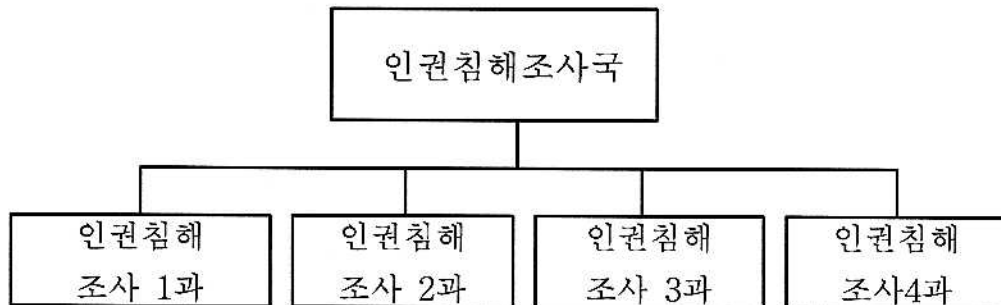
인권침해조사국

□ 주요기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헌법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2조에 정한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 외국인등 특수한 집단 또는 소수자가 관련된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시 접수한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 군 관련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 인권침해조사국 소관 사항에 관한 진정인과 증인 등의 보호·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업무
- 조사 또는 처리한 인권침해사건의 내용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조사결과의 공표, 고발 및 징계권고, 과태료부과 및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조직(안)

< 기 구 >



< 정 원 >

구 분	계	2·3급	4급	5급	6급이하	기능직
총 계	65	1	4	14	41	5
인권침해조사 1과	16	1	1	4	8	2
인권침해조사 2과	11		1	3	6	1
인권침해조사 3과	17		1	4	11	1
인권침해조사 4과	21		1	3	16	1

□ 부서별 기능

<인권침해조사 1과>

-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및 결과처리
- 인권침해조사국에서 조사한 사건 관련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에 관한 사이버 인권상담실 운영
-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 위원회의 권고안 및 의견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 실태의 확인
- 조사결과에 대한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 조사 및 처리한 인권침해행위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재판에 관한 사항

※ 정원 : 16인

- 2·3급 1인, 4급 1인, 5급 4인, 6급이하 8인, 기능직 2인

<인권침해조사 2과>

- 군대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군 검찰, 국군기무사령부, 헌병대 등 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 군대 내부의 인권상황·군 수사기관·군관련 구급시설에 대한 방문 및 실태조사
- 군관련 구급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군의 인권상황에 대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권고·협의 및 사후관리
- 조사된 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및 관할기관 이송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권고안 및 의견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 실태의 확인
- 조사결과에 대한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 조사 및 처리한 인권침해행위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재판에 관한 사항

※ 정원 : 11인

- 4급 1인, 5급 3인, 6급이하 6인, 기능직 1인

<인권침해조사 3과>

- 구금시설(군 관련 구금시설 제외)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 구금시설(군 관련 구금시설 제외)의 방문조사시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 수사·정보기관, 군대 외의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의 조사·구제
- 조사된 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및 관할기관 이송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권고안 및 의견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 실태의 확인
- 진정조사결과에 대한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 조사 및 처리한 인권침해행위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재판에 관한 사항

※ 정원 : 17인

- 4급 1인, 5급 4인, 6급이하 11인, 기능직 1인

<인권침해조사 4과>

- 외국인 장애인 난민 등 특수한 집단 또는 소수자가 관련된 인권침해사건의 조사·구제
- 다수인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의 조사·구제
- 다수인보호시설의 방문조사시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구제
- 조사된 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및 관할기관 이송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권고안 및 의견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 실태의 확인
- 진정조사결과에 대한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 조사 및 처리한 인권침해행위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재판에 관한 사항

※ 정원 : 21인

- 4급 1인, 5급 3인, 6급이하 16인, 기능직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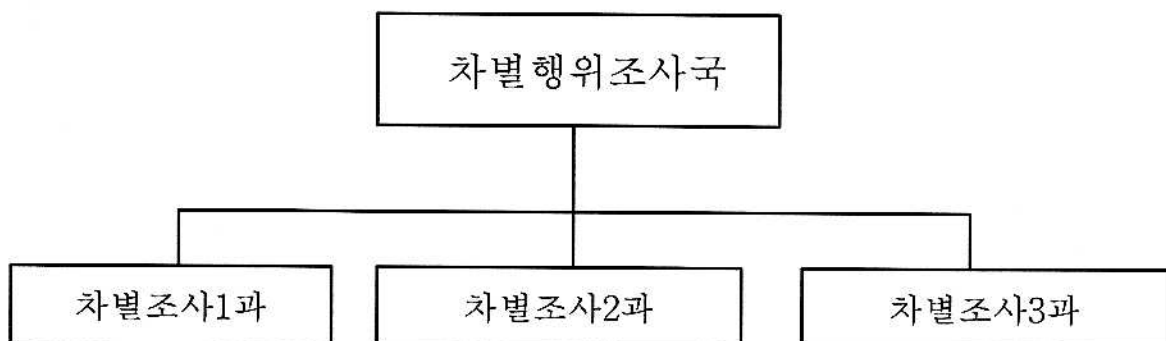
차별행위조사국

□ 주요기능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3호와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혼인여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조사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등을 포함)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국가·지방자치단체·구금보호시설에 의한 헌법 제11조에 정한 인권(평등권)침해에 대한 조사
- 조사 또는 처리한 차별행위 및 평등권침해 사건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차별행위의 공표, 고발 및 징계권고, 과태료부과 및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차별행위국에서 조사한 사건 관련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조직(안)

< 기 구 >



< 정 원 >

구 분	계	2·3급	4급	5급	6급이하	기능직
총 계	36	1	3	10	18	4
차별조사 1과	16	1	1	4	8	2
차별조사 2과	10		1	3	5	1
차별조사 3과	10		1	3	5	1

□ 부서별 기능

<차별조사 1과>

- 차별행위 직권조사 및 결과의 처리
- 차별행위국에서 조사한 사건 관련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 및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차별행위에 관한 사이버 인권상담실 운영
- 성별, 혼인, 임신과 출산,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의 조사
- 장애 및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의 조사
- 조사된 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및 관할기관 이송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권고안 및 의견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 실태의 확인
- 진정조사결과에 대한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 조사 및 처리한 차별행위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재판에 관한 사항

※ 정원: 16인

- 2·3급 1인, 4급 1인, 5급 4인, 6급이하 8인, 기능직 2인

<차별조사 2과>

- 성적 지향,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의 조사
- 조사된 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및 관할기관 이송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권고안 및 의견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 실태의 확인
- 진정조사결과에 대한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 조사 및 처리한 차별행위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재판에 관한 사항

※ 정원: 10인

- 4급 1인, 5급 3인, 6급이하 5인, 기능직 1인

<차별조사 3과>

-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사회적 신분 및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의 조사
- 조사된 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및 관할기관 이송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권고안 및 의견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 실태의 확인
- 진정조사결과에 대한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 조사 및 처리한 차별행위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재판에 관한 사항

※ 정원: 10인

- 4급 1인, 5급 3인, 6급이하 5인, 기능직 1인

대 외 협 력 국

□ 설치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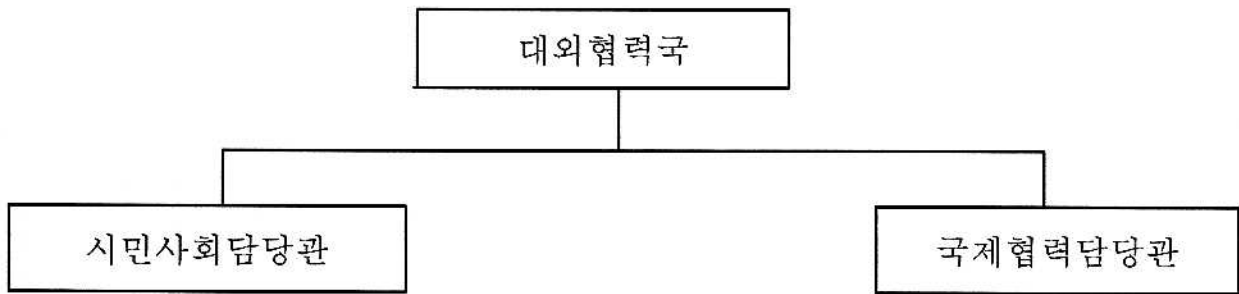
-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시민 사회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
-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조약과 기준을 국내에서 실현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UN의 인권관련기구, 지역 인권기구, 외국 인권기구, 국제인권단체와 협력 필요
- 보편적 국제기준에 근거한 인권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공적 정보활동과 교류협력 기능 필요
- 시민인권단체(NGO)등과 교류·협력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설치필요
- 근거 : 국가인권위원법상 대외협력 업무(법 제19조 제8호, 제9호)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주요기능

- 시민인권단체와의 상호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비영리 시민인권단체의 등록·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인권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 UN의 인권관련기구, 지역 인권기구, 국제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국제 회의에 관한 사항
- 아시아 태평양 인권기구 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및 관련 국제교류·협력
- 외국 인권기구에 관한 정보수집·분석, 인권기구간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국제인권단체 및 학술단체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 인권관련 국제단체와의 협력사업 및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 인권에 관한 국제전문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 민간부문의 국제인권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의 해외연수, 교육 및 훈련지원

□ 조직(안)

< 기 구 >



< 정 원 >

구 분	계	2·3급	4급	5급	6급이하	기능직
총 계	19	1	2	6	7	3
시민사회담당관	11	1	1	3	4	2
국제협력담당관	8		1	3	3	1

□ 부서별 기능 및 정원내역

<시민사회담당관>

-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인권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
- 시민인권단체의 의견수렴
- 시민인권단체의 활동 및 조직 현황 조사
- 대외협력국의 다른 과가 주관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정원 : 11인

- 2·3급 1인, 4급 1인, 5급 3인, 6급이하 4인, 기능직 2인

<국제협력담당관>

- 인권관련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국제인권기구, 지역 인권기구 및 인권관련 비정부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국인권기구 및 유사인권기구 등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인권기구, 지역인권기구, 외국인권기구 및 인권관련 비정부단체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 국제인권단체 및 학술단체에 관한 정보수집과 분석
- 인권단체 관련 국제회의 및 학술회의 주관에 관한 사항
- 인권관련 국제적 명망가 초청강연 및 간담회 주관
- 인권에 관한 국제전문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 민간부문의 국제인권활동의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의 해외연수, 교육 및 훈련지원
- 인권기구관련 국제회의 및 학술회의 주관에 관한 사항
- 아시아 태평양 인권기구 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및 관련 국제교류·협력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상황에 관한 조사·분석

※ 정원 : 8인

- 4급 1인, 5급 3인, 6급이하 3인, 기능직 1인

< 부속기관 >

인권연구교육원

□ 설치필요성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의한 연구·교육 관련 기능
 -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제1호)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제4호)
 - 인권에 관한 교육(제5호)
 -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를 위한 연구(제6호)
 -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제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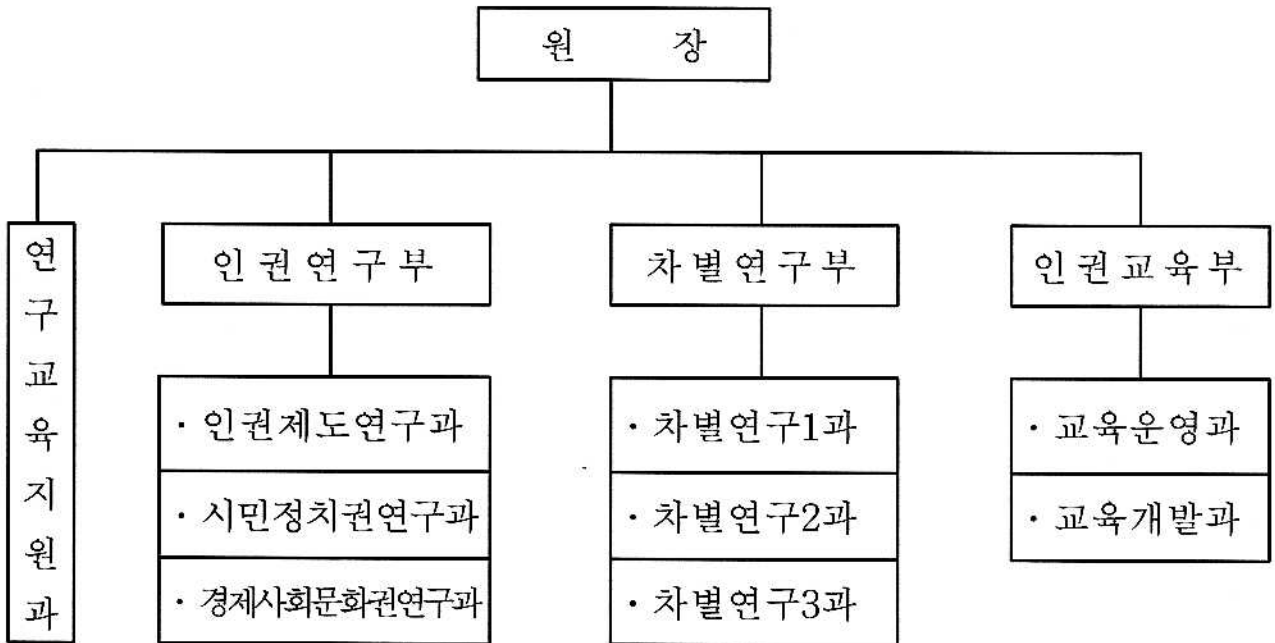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의한 인권교육과 홍보
 -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의 실시(제1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협의(제2항)
 - 고등교육기관과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제3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 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협의(제4항)
 -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요청과 공동 연구(제5항)
 -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제6항)

□ 주요기능

-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장·단기 연구 및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국내외 인권관련 법령 및 제도, 관행,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 관련기관 및 단체의 활동의 연구
- 국제인권조약·기준·국제인권제도에 관한 조사와 연구
- 국제인권기준에 부응하기 위한 국내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개선방안 제시
- 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한 지표의 개발, 기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의 수행
-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인권단체 기타 시민단체, 일반인에 대한 인권 관련 정보제공
- 위원회 각 부서가 요청하는 연구·교육의 수행
- 인권문제에 관한 학문적 연구촉진 및 지원
- 인권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개발 및 보급
- 다양한 인권분야의 연구와 교육 전문인력양성
- 인권강사은행 구축과 정보보급
- 각종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인권단체 기타 시민단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인권교육실시의 장려
- 인권관련 교육훈련의 실시
 - 인권위원 및 위원회 소속 공무원
 - 직무수행상 인권침해를 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와 판사를 포함한 법집행공무원들,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군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실시에 의해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분쟁의 예방과 분쟁의 적절한 처리에 기여
 - 인권침해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군인, 난민과 빈민,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에 의해 권리에 관한 정보의 인지와 권리침해를 방어하거나 구제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제도와 정보의 활용 촉진
 - 인권의 보호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인권단체 활동가, 변호사, 교사, 사회복지공무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활동가들, 의료인, 언론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실시에 의해 인권보호체제 구축

□ 조직(안)

<기 구>



<정 원>

구 분	계	1급	2·3급	4급	5급	6급이하	기능직
총 계	57	1	3	9	15	21	8
연구교육지원과	8	1(원장)		1	1	1	4
인권 연구 부 (16)	인권제도연구과	6	1(부장)	1	1	2	1
	시민정치권연구과	5		1	2	2	
	경제사회문화권연구과	5		1	2	2	
차별 연구 부 (16)	차별연구1과	6	1(부장)	1	1	2	1
	차별연구2과	5		1	2	2	
	차별연구3과	5		1	2	2	
인권 교육 부 (17)	교육운영과	9	1(부장)	1	2	4	1
	교육개발과 교재제작과	8		1	2	4	1

□ 부서별 기능 및 정원내역

<연구교육지원과>

- 인권연구교육원의 운영목표 수립 및 이행점검
- 인권연구교육원의 예산의 편성, 배정, 통제 및 검사, 조정
- 인권연구교육원의 문서 및 물품관리, 전산기자재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교육사업과제의 수행지침마련 및 이행점검
- 연구계획 및 결과에 관한 심의 및 자문 등 관련위원회 운영
- 인권연구교육원의 인력의 관리 및 훈련
- 연구교육담당관과의 인권연구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협의
- 인권연구교육원의 연구·교육 사업의 홍보
- 인권연구·교육 결과보고서의 발간지원
- 연구·교육부서의 운영 및 행사개최 지원

※ 소요정원: 8인(원장 포함)

- 1급 1인(원장), 4급 1인, 5급 1인, 6급이하 1인, 기능직 4인

인권연구부

<인권제도연구과>

- 인권연구부의 중장기 연구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 국제기구의 인권보장활동에 관한 연구
- 국제인권제도에 관한 연구
- 지역인권제도에 관한 연구
- 국내외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인권위원회와 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인권단체와 인권보장활동에 관한 연구

※ 소요정원: 6인(원장 포함)

- 2·3급 1인, 5급 2인, 6급이하 2인, 기능직 1인

<시민정치권 연구과>

-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정치적 이념 및 의사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선거권·공무담임권, 국민발안권, 청원권, 청구권, 신체의 자유·고문의 금지, 인신매매금지,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보호, 가정과 어린이의 보호, 생명권등에 관한 전문연구의 기획 및 수행
- 관련 국제인권조약과 국내외 법제·정책·관행에 관한 연구
- 관련 자유와 권리의 보장과 침해의 유형과 판단기준 기타 방지지침의 개발을 위한 연구
- 관련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
- 관련 사례 및 실태조사, 의견조사와 분석
- 관련 통계작성·유지·관리·보급
-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파악 및 분석

※ 소요정원: 5인

- 4급 1인, 5급 2인, 6급이하 2인

<경제사회문화권연구과>

- 건강권, 아동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식량 및 주거권, 노동권, 환경권, 문화권, 발전권에 관한 전문연구 기획 및 수행
- 관련 국제인권조약과 국내외 법제·정책·관행에 관한 연구
- 관련 권리의 보장과 침해의 유형과 판단기준 기타 방지지침의 개발을 위한 연구
- 관련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
- 관련 사례 및 실태조사, 의견조사와 분석
- 관련 통계작성·유지·관리·보급
-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파악 및 분석

※ 소요정원: 5인

- 4급 1인, 5급 2인, 6급이하 2인

차별연구부

<차별연구1과>

- 차별연구부의 중장기 연구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 성별, 임신·출산, 혼인, 가족상황, 용모등 신체조건, 장애,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전문연구 수행
- 관련 국제인권조약과 국내외 법제·정책·관행에 관한 연구
- 관련 차별의 유형과 판단기준 기타 방지지침의 개발을 위한 연구
- 차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
- 관련 사례 및 실태조사, 의견조사와 분석
- 관련 통계작성·유지·관리·보급
-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파악 및 분석
- 부의 연구결과발표 및 세미나 기타 학술행사개최

※ 소요정원: 6인

- 2·3급 1인, 5급 2인, 6급이하 2인, 기능직 1인

<차별연구2과>

- 사상, 정치적 의견,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전문연구 수행
- 관련 국제인권조약과 국내외 법제·정책·관행에 관한 연구
- 관련 차별의 유형과 판단기준 기타 방지지침의 개발을 위한 연구
- 차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
- 관련 사례 및 실태조사, 의견조사와 분석
- 관련 통계작성·유지·관리·보급
-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파악 및 분석

※ 소요정원: 5인

- 4급 1인, 5급 2인, 6급이하 2인

<차별연구3과>

-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전문연구 수행
 - 관련 국제인권조약과 국내외 법제·정책·관행에 관한 연구
 - 관련 차별의 유형과 판단기준 기타 방지지침의 개발을 위한 연구
 - 차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
 - 관련 사례 및 실태조사, 의견조사와 분석
 - 관련 통계작성·유지·관리·보급
 -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파악 및 분석
- ※ 소요정원: 5인
- 4급 1인, 5급 2인, 6급이하 2인

인권교육부

<교육운영과>

- 인권교육부의 교육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
- 국내외 인권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 인권학교운영, 사이버 인권학교운영 기타 인권교육의 실시
- 순회교육 계획수립과 순회교육의 실시
- 인권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편성과 교수요목의 작성
- 인권교육안내서 작성 및 보급
- 인권강사은행의 구성·운영, 강사선정 및 초빙
- 피교육자의 차출·등록 및 학급편성, 학적관리
- 교육기자재의 구비 및 운영
- 인권교육 전문요원의 양성훈련
- 교육평가의 실시와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 직원교육의 실시
- 기타 부의 다른 과가 소관하지 아니한 업무

※ 소요정원: 9인

- 2·3급 1인, 4급 1인, 5급 2인, 6급이하 4인, 기능직 1인

<교육개발과>

- 인권교육수요조사의 실시 및 분석
- 국내외 인권 관련 교육제도 및 교육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권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 및 과목 등)의 개발·보급
- 인권의식 및 인지도 측정도구 개발과 조사
- 국내외 인권교육자료의 조사·분석
- 인권교육자료(인쇄, 영상자료)의 작성·편찬·제작 및 보급
- 인권교육연감의 발간·관리

※ 소요정원: 8인

- 4급 1인, 5급 2인, 6급이하 4인, 기능직 1인

인권자료실

□ 설치필요성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에 의해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인권 관련 국가대표 전문도서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수행과 일반인 및 관련 기관의 이용에 제공함
-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시민 인권단체의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인권에 관한 의식과 관심을 고양시킴과 아울러 국내외의 인권기구 및 인권단체와의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보제공 및 문화, 조사·연구, 평생교육에 기여할 인권전문도서관 설치가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모든 형태의 자료 및 기록을 정리·보관, 공개할 도서관이 필요함

※ 주요 정보와 자료(예시)

- 국제인권조약과 기준에 관한 국제기관의 해석자료
- 국제인권기구들의 인권논의의 동향에 관한 정보와 자료
- 국내외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분석자료 등

※ 자료실의 자료(예시)

-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사진·그림등 각종 인쇄자료, 영상 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형태물·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기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 도서관 봉사 및 문고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 주요기능

- 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인권에 관한 국내외 정보와 자료의 조사·연구,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 인권관련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인권관련 기구와 단체와의 인권관련 정보와 자료의 교류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관련도서관등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자료실 자료의 분류와 목록에 관한 사항

- 자료실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 자료실의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자자료화 및 문헌정보관리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인권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시민과 인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인권자료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인권 관련 국가대표 전문도서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인권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 봉사제공

※ 정원: 12인

- 4급 1인, 5급 3인, 6급 이하 6인, 기능직 2인